

폐기물 처리작업 중 적재물에 깔림

재해 개요

2020.05.11.(월) 14시 03분경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에 소재한 00사업장 내에서 하역 및 비닐 폐기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 운전자가 2단 적재된 폐기물 압축물(높이 2m, 무게 1단당 850kg)의 뒤편에 재해자가 서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, 굴착기로 2단 폐기물 압축물을 밀어 넘어뜨려 그 아래에 재해자가 깔렸으며,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16시04분경 사망한 재해임.

재해관련그림



굴착기가 2단 폐기물 압축물 앞으로 이동

굴착기가 폐기물 압축물을 밀어 넘어뜨리며 재해자가 그 아래 깔림

재해발생원인

-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안전조치 부적정
 - 주용도 외의 사용
 -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작업계획서 미준수
 - 유도자 미배치 및 신호방법 미지정
- 중량물 취급 작업시 안전조치 부적정
 -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계획서 미작성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시 안전조치 부적정
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하는 작업시 작업지휘자 미배치
-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
 - 높이 2m 이상의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

재해예방대책

-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안전조치 준수
 -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설비 주용도 외의 사용 금지
 -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실행
 -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하고,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수행
- 중량물 취급 작업시 안전조치 준수
 -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실행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시 안전조치 준수
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하는 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, 작업자는 지시에 따름
-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
 - 높이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,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물건의 위험성·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,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,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